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4
----------	-----

2022. 12. 16.(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임병운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2년 11월 14일
-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6일
-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5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병운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기술상 오류를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술상 오류를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안 제5조)
- 별지 서식의 기술상 오류와 용어 등을 정비하여 전문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제출배경

- 이 조례에 기술상 잘못된 표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 정비 소요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2조는 잘못된 표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체가 ‘도지사’ 이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도지사이라 한다’ 에서 ‘도지사라 한다’ 로 어절을 바로잡음
- 안 제4조의 홑낫표(「 」) 내 띄어쓰기를 정비함
-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사용된 ‘별지 제○호서식’ 은 복수의 별지 내용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는 별지 서식이 단수(1개)이므로 이를 바로잡고,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별지 서식’ 으로 개정함(부가적으로 별지 서식도 전문개정함)
- 조례의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조례에 기술된 잘못된 표현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도지사” 이라” 를 “ “도지사” 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 을 “별지 서식”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 을 “별지 서식”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 을 “별지 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을 “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 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를 “별표에 따른”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 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 ① -----

-----.

1. 별지 서식-----

2. (현행과 같음)

②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수료) -----
----- 별표에 따른 -----

-----.

1. ~ 3.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제1호

○ 사 유

-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관계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기술적인 정비 사항임
-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결론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